Colloquium on the Implementation of UNESCO's 2005 Convention in Korea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1차 국내 컬로퀴엄”

-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증진이란? -

유네스코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협약 - 제1차 국내 컬로퀴엄(자료집)

펴낸 때 | 2019년 10월 17일
펴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045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유네스코길) 26
엮은이 | 전진성, 신소애, 장자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CL-2019-DI-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목 차

Ⅰ. 행사개요 ····· 1

Ⅱ. 연사 & 토론자 소개 ····· 3

Ⅲ. 발표 1 ····· 7

Ⅳ. 발표 2 ····· 43

행사 개요

1 사업 배경

- ㅇ 한국은 2010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년 협약)을 110번째로 비준하였으며, 2017년 6월 제6차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임
- ㅇ 2018년에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한 회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2014년 제출 이후 두 번째 제출), 『2018 글로벌 모니터링포트』를 국문 번역하여 발간한 바 있음
- ㅇ 글로벌리포트 한국어판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ㅇ 특히 지난 2019년 8월 27일에 개최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국제 컬로퀴엄-아태지역 맥락에서의 협약 이행 도전과 과제' 성료 후, 국내 차원에서 2005년 협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특히 유관 분야 학자 및 관계자 간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협약 이행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제1차 국내 컬로퀴엄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이란?)

□ **목적 및 주요내용**

- ㅇ 2005년 협약에 대한 국내 차원의 이해와 이행에 관한 담론 형성에 기여
- ㅇ 2005년 협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 차원의 인식 제고 및 인식 증진에 기여
- ㅇ 2018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리포트 내용의 국내 확산

□ **행사개요**

-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10:30 - 12:30
- 장소: 고려호텔 그랜드볼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
- 참가자: 2005년 협약 관련 국내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명
- 주요내용: 2005년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 및 과제

□ **프로그램**

시 간		세부내용
10:00-10:30	30'	참가자 등록
10:30-10:40	10'	<컬로퀴엄 개회식> 개회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10:40-12:30	110'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이란?** 발표 1 :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이해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20') 발표 2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과제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교수 (20') 토론 (70') 좌장: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김경욱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 • 위근우 경향신문 '위근우의 리플레이' 칼럼니스트 • 전진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
12:30-14:00	90'	오찬

연사 & 토론자 소개



한건수 (좌장)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건수교수는서울대인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인류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한국가족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및 정부간위원회 대표단 자문역으로 다수 참석한 바 있다.



발표 1 -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이해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경구 교수는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동경대 대학원 문화인류학교실에서도 수학한 바 있으며, 제14사 외무고시 수석 합격 후 외무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강원대 인류학과, 국민대 국제학부를 거쳐 현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민대 국제학부장,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을 역임하였다.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집위원장,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한국이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회과학분과 및 문화분과 위원, 집행위원을 맡은 바 있다.



발표 2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이 시급한 분야
(한국 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교수, 기획처장

이동연교수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기획처장을 맡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 「메타비평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 준비단 단장을 맡아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보고서를 주도했고,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플랫폼 창동61 총괄예술감독,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공동조직위원장, 계간 『문화/과학』 편집인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예술@사회』, 『문화자본의 시대』, 『문화연구의 생성과 종말』, 『대안문화의 형성』 등이 있다.

토론자	
	김경욱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전문위원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시티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의회에 재직하며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문화예술관광학과 겸임교수(2015년)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중장기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적인 저서로 『문화정책과 재원조성』, 『문화재단』 등이 있다.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 박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연구책임을 맡았다. 독일 베를린대학(TU)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 연구교수(2010~2013년)와 통일연구원 기초사업팀 연구위원(2002~2009년)을 지냈으며, 한국평화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의 주요한 연구 관심 분야는 비교민속학, 유럽인류학, 독일 통일, 독일지역학 등이다.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혜옥 처장은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서무처장으로, 세종시 시민주권회의(문화체육관광분과) 자문위원을 겸임하고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동 대학원에서 홍보학을 전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홍보사무관으로 실무를 담당했으며, 『세종시 이렇게 만들어졌다』의 공동저자이다.
	위근우 경향신문 '위근우의 리플레이' 칼럼니스트 위근우 작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금, 만화] 객원 편집장, 매거진 아이즈 (ize)의 취재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주로 스포츠, 예술, 문화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2017년부터 경향신문에 토요판 칼럼 '위근우의 리플레이'를 연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웹툰의 시대」, 「프로불편러 일기」, 「젊은 만화가에게 묻다」, 「대안문화의 형성」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허용호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한국공연문화학회 부회장, 한국민속학회 연구위원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정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및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로 활동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전통연행예술과 인형오브제』, 『인형연행의 문화전통 연구』, 『연행론의 학문적 연행에 대한 반성적 고찰』, 『줄다리기』, 『행당동아기씨당굿』, 『씨름』 등이 있으며 나손학술상(2003년), 월산민속학술상(2015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 홍기원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주임교수로 "문화정책론"."문화다양성과 다문화정책", "문화예술과 제도"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뉴욕대학교 와그너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자료포락을분석을 이용한 문화예술서비스공급의 효율성 측정: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의 비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 위원, 서울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발표1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이해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이해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 제1차 국내 컬로퀴엄
2019.10.18 부천시
한경구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모든 사람들이 배운 대로만
보고 듣는다면?

자유로서의 문화,
억압으로서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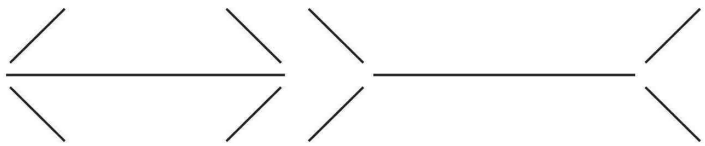
문화란?

- 고전적 정의
 -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지는 또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that complex whole) E. B. Tylor
 - 문화란 어떤 사회의 전체적 생활양식이다. R. Linton
 - 삶을 위한 디자인 (designs for living). C. Kluckhohn
- 레이몬드 윌리엄스:
 - 영어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단어 두셋 중의 하나이다. 크게 3가지 용법. 1) 정신적 발전과 지성의 도야 2) 예술 3) 인류학적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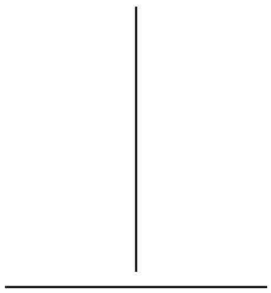
Müller-Lyer illusion

어느 것이 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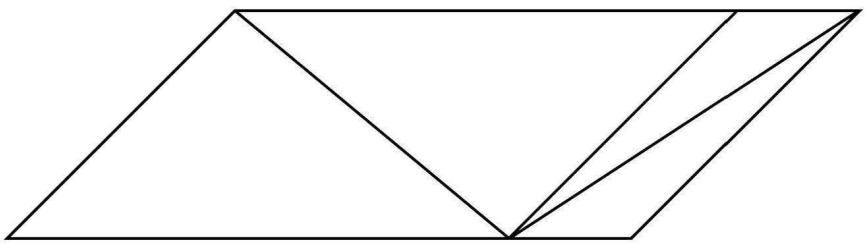
어느 것이 길어 보일까요?



어느 것이 길까요?



어느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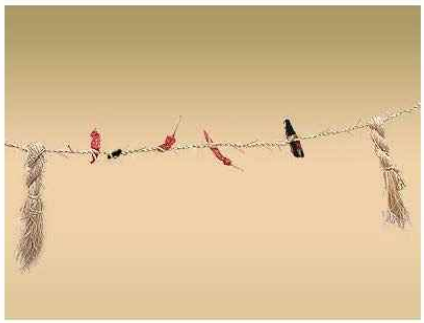
문화란? – 현대적 시각

- 공유된 무관심
 - 공유되지 않은 관심은?
- 당연하게
 - 독특하고 인위적인 것을
 -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필적에...
- 자기 검열과 침묵의 문제
 -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기,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기
 - 에디슨: 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나요?

옛날옛적 호랑이 담배 필적에



금줄과 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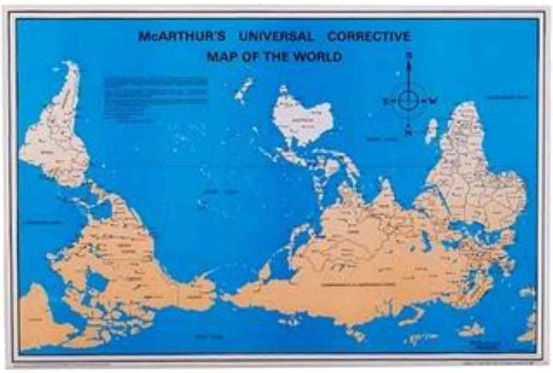




문명과 문화의 양면성

- 문명화 과정
 - 이성과 진보. 지식과 기술의 힘
 - 타자를 문명화 대상
- 문화화(사회화) 과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 하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문화를 알게 되고 습득하며 그 문화가 강조하는 능력을 계발하게 된다. 문화를 내면화
 - 문화의 억압적 성격: 잃는 것
 - 자신의 문화가 강조하는 것들만 중시.
 - 다른 잠재 능력들을 무시하고 버리거나 억누르게 된다...
 - 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

Australia Is Not Down Under!



문화란? 문명이란? – 현대적 시각

- **이성으로서의 문명**: 시민혁명
 - 시민사회의 등장. 궁정귀족에 대한 비판
- **권력으로서의 문명**: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 유럽의 자기 인식. 타자를 미개와 야만으로 규정. 문명화 작업
- **억압으로서의 문화**
 - 공유된 무관심으로서의 문화. 공유되지 않은 관심은?
 - 의심하지 않기: 독특하고 인위적인 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 자기 검열과 침묵: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기,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기
- **자유로서의 문화**
 - I-Culture (나의 문화)
 - Liberal Studies as Liberation of Self

문화와 자유

- 문화를 통한 자유
 - 학습
- 문화로부터의 자유
 -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부터 벗어나
 - 또 다른 삶의 방식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 자신의 전통과 인습과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더욱 나은 삶에 대한 모색
 - 도덕적 용기와 창의성. 자유로운 영혼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Cultural Diversity

- 문화 간 다양성
 - diversity of cultures. intercultural diversity
 - 문화들의 다양성
 - 여러 상이한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
 - UNESCO 선언 및 협약
- 문화의 내적 다양성
 - diversity within a culture. intracultural diversity
 - 문화내의 다양성

UNESCO의 문화 개념의 역사

- 유네스코의 설립 초기에는 고전적 문화 개념에 미련
 - 문화를 매우 협의로 정의하는 경향.
 - 인류가 성취한 최고의 것. 그 보급과 교류에 우선적 관심.
- 전후의 세계: 근대화 및 민주주의 등 보편 담론이 지배
 - 유네스코조차 근대화(modernization)와 개발(development)
 - 문화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함.
 - 개발 협력과 관련한 유네스코의 교육은 전통문화보다는 문해(literacy) 교육 등에 집중.
 - 기본적으로는 근대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
 - 문화에 대한 관심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유네스코를 위한 개발사업의 경우

- 마가렛 미드
 - 유네스코를 위해 개발 사업의 매뉴얼을 집필
 - 원주민들의 문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충격, 서구화된 또는 서구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현지 엘리트와 대다수 원주민 사이의 거리,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열망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등에 주목하면서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 강조.
- 대부분의 개발 원조 부서
 - 마가렛 미드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 명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경제학자나 근대화론자들의 접근을 선호(Mandler 1963).

유네스코의 좌절과 문화

- 냉전의 영향
 - 유네스코 초기의 국제주의적 이상과 희망의 좌절
 - 소위 '진영' 논리가 다른 것들을 압도.
-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제안과 우려
 - 문화 간 이해나 개발의 비전은 '한가한 소리' 또는 '비현실적 이상' 정도로 치부
 - '우리의 싸움에 비협조적인 언설'
 - '적을 이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
 - 조롱과 의심과 공격의 대상

유네스코의 인류학적 문화 개념 수용

- 마가렛 미드, 냉전에서 패배하다?
 - 전후의 세계에 대한 기대: 이상과 희망에 충만
 - 마가렛 미드 등은 전후의 국제질서가 문화다양성의 합주(the orchestration of cultural diversities)를 기반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Mandler 2013).
 - 그러나 냉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유네스코에서조차 문화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함.
- 유네스코가 문화인류학의 문화 개념을 본격적으로 수용
 - 멕시코 세계문화정책회의(1982)에서 문화를 예술과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적 전체 로 정의
 - 전 세계의 문화정책이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 강조.

유네스코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 1947: 미국인류학회 이사회
 - 유엔의 "보편적" 인권선언 준비 과정에 우려와 반대 표명: 무시당함.
- 1948: 세계(보편적 Universal) 인권 선언
 - 자신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에 대한 권리 배제. 개인의 권리로만 인식.
 - 다만, GATT는 문화적 예외 조항. 영화 관련 스크린 쿼터 인정.
- 1960년대 이후에야 서서히 인식 변화
 - 유엔과 유네스코는 문화를 중시한다고는 했으나 1966년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야 비로소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즉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 인정.
 - 이후 1992년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과 1993년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거쳐 2001년과 2005년의 선언과 협약 등장.

문화에 대한 권리

-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제한적이지만 "최초로" 언급됨.
 -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한계
 -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만 인정.
 - 다른 다양한 소수자 집단은?

문화다양성 선언의 맥락

- 역사적 맥락
 - 문화상대주의와 문화 다양성 선언은 지구상의 수많은 문화와 인간 집단이 제국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식민지배 때문에 파괴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뒤늦은 노력의 하나로 등장한 것.
- 윤리적 문제와 함의
 -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
 - 문화적 전통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문화적 관행의 존속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의 존재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계속 강요하는 결과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의 문제점

- 실질적으로는 국민국가의 문화에 초점
 - 문화의 경계를 실질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와 동일시하는 경향
 - 다양한 국민문화의 지속적 존재를 당연시하고 중시
-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부족
 - 문화 내에서 다양한 가치, 세계관, 신념, 의견, 행동패턴, 의례, 제도 등의 관계에 대한 언급 부족.
 - 대부분의 국민 국가들이 19세기와 20세기에 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력한 동질화와 통합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듯.
- 국제기구 – 국민국가로 이루어진 기구라는 한계?

- 개인과 문화
 - 다양성을 다수의 문화의 존재를 통하여 보존한다는 발상?
 - 다양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물권의 종다양성 논의를 넘지 못함.
 - 자칫하면 기존의 문화들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문화의 物化(reification)?
 - 개인들을 문화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파악.
 - 문화들 간의 경계를 고정되고 견고한 것으로 인식.
 - 종족(소수민족)집단, 소수자 집단들이 계급 위계에 위치하고 있음.

협약 이후의 문화다양성

- 2015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4.7
 - '문화적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적 기여에 대한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부분적 포함
 -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 한계
 - 문화다양성 자체가 아니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란?

- 문화다양성의 보호
 - 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님.
 - 문화란 늘 변하는 것 -- 다양성 자체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 문화다양성 보호의 목적
 - 단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
 - 레비-스트로스의 논의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음
- 새로운 상황의 전개
 -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의 발전.
 -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문제
 - 국민국가의 아이덴티티 문제.
 - 민족주의적 관심은 물론 자국의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

나의 문화?

- 문화화/사회화 과정
 - 개인은 집단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
 -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
 - 동질적이지 않음
- 경계를 넘어서
 - 집단의 경계 밖의 가치와 규범도 매력적
- 나의 문화(私文化, I-Culture)
 - 니시카와 나가오『국경을 넘는 방법』
 - 집단 내 개인들은 자신의 집단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민족문화에서 한국의 "문화들"로

- 민족문화에서 한국의 문화들로
 - 문화민족주의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야.
 - 일본의 '니혼진론(日本人論)과 '니혼분카론(日本文化論)'은 반면교사(反面教師).
 - 국민국가에 매몰된 문화 개념과 경계를 넘어서는 것.
- 통합과 동질성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 국민국가건설과 국민형성, 분단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 그러나...
 - 지나친 동조와 획일성으로 다양성 위축. 창의성 질식
 - 서울과 지방, 지역, 젠더, 계층, 연령과 세대 등의 문제.

한국의 "문화들"

- 누구의?
 - 한인, 이주민, 재외한인, 한국어 사용자 및 한국문화 연구자와 애호자. 성, 연령과 세대, 지역 등 소수자
- 한국문화의 호소력
 - 특수성과 우월성의 강조에서 보편적 호소력을 가진 문화로 발전
 - 현대 한국이 경험한 것들—경제성장, 산업화, 민주화, 여성권리의 신장, 환경운동의 성장 등—은 매우 풍부. 매우 폭넓은 관심과 학습과 모방의 대상으로 호소력 있음
 - 한국문화의 성취와 세계적 호소력을 전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인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내적 다양성
 -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 초국가적 네트워크

미래의 문화정책

- 문화정책의 중점 변화 필요
 - 문화의 원형의 발견과 보존 등 과거지향적인 민족문화를 추구하는 경향.
 -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비전 제시가 원형보존보다 우선되어야 함.
- 미래지향적 문화다양성
 - 문화의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과 열망 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문화의 유연함
 -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넘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노력.
 - 현실에 대한 비판과 끊임없는 대안의 모색

교육적 함의

- 한국문화의 내적 다양성과 그 발전
 - 발견과 탐구와 옹호: 현대 한국의 문화다양성 파악. 한국민족지 및 한국 속의 세계민족지 등
 - 민족지(ethnography) 도서관 / 세계문화박물관
 - 문화다양성 지수 및 지도 작성
-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 기회
 - 미디어와 발표 공간의 문제. 자본과 상업 문제
- 통문화적(Cross-cultural) 능력의 함양
 -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경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님.
 - 경계를 넘을 줄 아는 능력이 중요

한국에서 문화다양성은
전투에서는 승리
전쟁에서는 패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요 승리

- 1998 스크린쿼터 투쟁. 한미 BIT 협상
- 2003.02 이창동 감독, 문화부 장관으로 입각
- 2004.06 **창의한국**
- 2005 문화예술위원회(ARKO) 발족
- 200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지지 투표
- 2006 문화헌장
- 2007.10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2008.06 다문화가족지원법

- 2010.07 문화다양성협약 비준
- 2014.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2015.05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행사
- 2016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 2017.0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에 피선

희망과 기대

- 김대중대통령 (1998.02-2003.01)
 - 선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 비전
 - 문화를 넓게 생각: 예술과 문학에 국한되지 않음.
 -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근간으로 인식
 - 문화적 창조가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
 - 새로운 문화정책에 대한 기대
- 문화예술위원회 발족
- 소위 문화권력의 재편

<창의한국>의 논란과 한계

-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에 대한 평가
 -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중 가장 정교한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건수 2017)
 - 문화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의욕적인 로드 맵으로 포장했지만 그 내용은 이미 거론되던 각종 논의와 제안을 짜깁기한 것으로서 일관된 철학이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희문 2007)
 - 문제 의식과 총론은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다만 문화를 통한 발전의 방법 제시에는 한계
- <창의한국>의 문제: 문화 개념 이해 문제
 - 문화 개념과 관련하여 "문화를 삶의 양식으로 설명하는 인류학적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유네스코의 문화개념을 수용한다"는 등 오해 (한건수 2017)
 - 유네스코가 1980년대에 도입한 인류학의 문화개념도 이미 상당히 낡은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전쟁에서 패배?

2006년 이후 노무현 정부

- 정치인 문화부 장관
 - 2004.06.30 <창의한국> 발표 후 22일만에 이창동 장관 경질. 정치인 정동채 임명
- *창의한국 :*
 - 문화를 통해 경제적 발전의 도모 표방하는 시도로 해석.
- 문화를 문화산업으로 간주.
 - 경제성장의 미래 동력이 될 것을 기대.
- 스크린 쿼터 절반으로 축소
 - 2006.02 미국과의 FTA 등 협상 과정에서
-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 연기

이명박 대통령

2008.02-2013.01

- 소위 잃어버린 10년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
- 새로운 문화 정책을 선언.
-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10번째 국가).
 - 문화다양성 법 초안 마련. 그러나 문화다양성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음.
- 문화권력의 변화 - 더욱 거칠게 이루어짐
 - 2008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
 - 암시와 통보가 통하지 않을 경우 압력을 행사했다는 전설. 법정투쟁도

문화, 산업으로 간주되다

- 문화산업 중심 문화정책
 - 수사와 언설은 큰 차이가 있었으나 문화 정책의 지향성과 내용을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큰 변화 없음. 정책 지향점의 수렴. (이병량 & 황설화 2012)
- 문화예산의 변화
 - 2003년에서 2011년까지 규모 면에서 커다란 변화 없음.
 -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시작. 이명박 정부에 계승.
- 문화를 내건 토건
 - 건설 프로젝트들을 문화정책의 추진이라고 홍보?

박근혜 대통령

2013.02-2016.12/2017.03

- 취임사에서 문화 융성을 강조.
 - 문화계 일각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기도.
- 부패 문제
 - 소위 문화계의 황태자.
 -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들
- 소위 좌파에 대한 문화투쟁
- 블랙 리스트
 - 일부 문화계 인물에 대한 체계적, 조직적 차별과 배제.
- 검열이 부활했다는 우려.
 -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
- 기억의 통제
 -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역사교과서 프로젝트

2017년 10월 19일

그리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우려 표명 2007

- 한국의 '단일 민족' 강조에 대한 우려 표명
 -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
 - '한국은 민족적(ethnic)으로 동질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소수민족문제에 대해 경험이 없으며 민족적 동질성의 기반을 이루는 '순혈' 원리가 '혼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고 있다...
-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 정부는 나름대로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그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려 했던 것?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0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문화 다양성에 대하여

65. 위원회는 당사국 인구 중 다문화주의의 수용 정도가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15조).

66.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a)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해소를 포함하여 인구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것;

b)문화적 다양성이 받아 들여지는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두가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1호(2009)를 제시한다.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흥망사

왜?

급작스러운 관심 증대 그리고...

- 1990년대 후반 급작스러운 관심의 증대
 - 스크린 쿼터 방어 운동
 - UNESCO 협약, 무기로 사용
- 2006년 이후 관심의 급감
 - WTO 반대의 초점이 농산물로 이동
 - 지적 기반이 약함. 피상적 이해
 - <창의 한국>의 문제: 일반론에 그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문화와 창의성을 통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아이디어와 계획의 부족
 - 정치적 환경 – 문화권력 투쟁에 대한 피로감?

문화다양성의 허약한 기반

- 한국인의 문명 의식
 - 신화: 단군(檀君)이 나라를 열고(BC 2333), 기자(箕子)가 교화를 하다(BC 1120)
 - 근대 이전의 한국은 "왜" 등 주변의 야만국과는 달리 문치교화의 나라라는 것이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일부. 특히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1618-1924)의 등장 이후
- 조선시대와 문화다양성
 - 유교, 특히 주자학은 표현의 자유, 문학,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
 - 조선시대에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사고를 찾아보기 어려움.

내셔널리즘 이전

- 조선시대는 민족보다 보편적 문명 의식
 - 원초적 민족은 형성되었으나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는 존재하지 않음. 근대에 만들어진 것(일본을 통해서 독일에서 수입)
 - 이민 정책. 외래성씨를 당연시.
 - 단군: 나라를 세운 사람에서 생물학적 조상으로 변신.
- '문명 vs. 야만' 및 '옳음 vs. 그름' 의식존재
 - 소중화 의식. 주변국가를 야만시.

내셔널리즘

- 상처투성이의 민족주의
 - 서구의 충격과 근대화 과정
 - 식민 지배
 - 분단, 6.25, 그리고 냉전
- 유교적 근대성과 동원체제
 - 일제강점기에 국민총화
 - 분단, 6.25, 냉전, 유신 속에서 동원체제 지속
- 민주화 이후의 내셔널리즘
 - 경제성장과 자신감과 '제2의 서구'를 맛보다
 - 세계화와 IMF 금융 위기의 경험.

문화보다 경제를

- 경제발전에 초점
 - 부국강병의 모색
 - "실학에 대한 강조. 공리공론에 대한 공포
- 권위주의 정부
 - 검열: 공산주의 위협을 내세워 정권 수호에 악용.
 - 유교 전통과 민족주의적 열망: 미풍양속. 공중도덕. 동방예의지국
- 위기 의식
 - 아직은 문화를 할 때가 아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야...
 - 문화: 우선순위가 낮음

위기 의식

- 만성적 위기?
 - 날마다 위기의 계속. 그 속에서 살다 보니...
 - 1980년대에 비로소 정상으로 회귀하는 듯
- 정상으로의 복귀
 - 경제성장의 가시적 효과들. 국민적 자존심의 회복
 - 현대사에 대한 성찰. 1986년의 민주화 경험
 - 자신감과 낙관주의적 경향
 - OECD 가입. 세계화 추진
- 1990년대 또 다시 위기 모드로 돌아가다?
 - IMF 금융위기. 불안감의 확대. 낙관주의의 종언.

소위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갈등

- 갈등의 폭발 가능성
 -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의 변화
 - 장기적, 체계적 대책의 부재
 - 차별과 배제의 지속
- 대책의 문제
 - 체계적 이민정책의 부재: 다문화 "열풍" 속의 사각지대들
 -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의 표출과 토론 없이 "올바른" 가치로서 등장.
 - 다문화는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과 환상의 확산
 - 다문화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
 -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가치 변화를 수용할 준비 부족

한국사회의 문제로서의 다문화문제

- 소위 "다문화"사회의 갈등의 본질
 -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의해 초래되는 갈등이 아님
 - 한국사회의 갈등이 이주민과 그 자녀를 통해 나타남
- 소수자, 약자로서의 이주민
 - 한국사회의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
 -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일반의 문제로서 접근할 필요.
- 대책
 - 해결책이나 묘안은 없음. 지속적 관리가 대책.
 - 다문화사회의 갈등은 한국사회의 갈등의 일부
 - 한국사회 인권상황 등의 전반적 개선 중요.
 - 체계적 이민정책 필요

문화다양성 지표로 본 한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2015)
 - 다문화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북한이탈주민 등 11개 집단에 대한 수용도, 친밀도, 포용도 조사
- 결과
 - 수용도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여성(2.16점), 청소년(2.20점), 노인(2.31). 성소수자(3.60점)에 가장 우호적.
 - 많은 국민들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상적·관념적 사실에는 동의
 -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수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인식은 부족

문화다양성의 보호란?

- 문화다양성의 보호
 - 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님.
 - 문화란 늘 변하는 것 -- 다양성 자체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 문화다양성 보호의 목적
 - 단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
- 상황
 - 레비-스트로스의 논의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음
 -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의 발전.
 -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문제
 - 국민국가의 아이덴티티 문제.
 - 민족주의적 관심은 물론 자국의 문화산업 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

민족문화에서 한국의 "문화들"로

- 민족문화에서 한국의 문화들로
 - 문화민족주의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야.
 - 일본의 '니혼진론(日本人論)과 '니혼분카론(日本文化論)'은 반면교사(反面教師).
 - 국민국가에 매몰된 문화 개념과 경계를 넘어서는 것.
- 통합과 동질성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 국민국가건설과 국민형성, 분단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 그러나...
 - 지나친 동조와 획일성으로 다양성 위축. 창의성 질식
 - 서울과 지방, 지역, 젠더, 계층, 연령과 세대 등의 문제.

한국의 "문화들"

- 누구의?
 - 한인, 이주민, 재외한인과 그 배우자 및 자손, 한국어 사용자 및 한국문화 연구자와 애호자
- 한국문화의 호소력
 - 특수성과 우월성의 강조에서 보편적 호소력을 가진 문화로 발전
 - 현대 한국이 경험한 것들—경제성장, 산업화, 민주화, 여성권리의 신장, 환경운동의 성장 등—은 매우 풍부. 매우 폭넓은 관심과 학습과 모방의 대상으로 호소력 있음
 - 한국문화의 성취와 세계적 호소력을 전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인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내적 다양성
 -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 초국가적 네트워크

미래의 문화정책

- 문화정책의 중점 변화 필요
 - 문화의 원형의 발견과 보존 등 과거지향적인 민족문화를 추구하는 경향.
 -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비전 제시가 원형보존보다 우선되어야 함.
- 미래지향적 문화다양성
 - 문화의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과 열망 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문화의 유연함
 -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넘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노력.
 - 현실에 대한 비판과 끊임없는 대안의 모색

정책적, 교육적 함의

- 한국문화의 내적 다양성과 그 발전
 - 발견과 탐구와 옹호: 현대 한국의 문화다양성 파악. 한국민족지 및 한국 속의 세계민족지 등
 - 민족지(ethnography) 도서관 / 세계문화박물관
 - 문화다양성 측정 노력
-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 기회
 - 미디어와 발표 공간의 문제. 자본과 상업 문제
- 통문화적(Cross-cultural) 능력의 함양
 -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을 줄 아는 능력

무엇을 할 것인가

맺음말

사람이 중요하다!

- 제도와 담론
 - 선언, 헌장, 법률, 협약 등이 있다고 문화다양성이 자동적으로 보호되고 증진되는 것이 아님.
- 사람의 변화 그리고 실천
 -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 모두가 그 의미를 잃고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 그러지 않으려면...

경계를 넘어 미래로!
Thank you!
Crossing Boundaries, Embracing the Future!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HAN, Kyung Koo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표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과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과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개요

1) <문화비전 2030>의 패러다임

2018년 12월 <새문화정책준비단>이 1년 4개월 동안 고생 끝에 마련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이하 문화비전2030)가 발간되었다. 22차례의 준비단 회의, 6회의 분과별 현장토론회, 4회의 문체부 장관 및 실국 관계자 워크숍, 13회에 걸친 찾아가는 문화청책 토론회 등 총 70여회에 걸친 협치를 통해 만든 문화비전2030은 국가 문화정책이 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비전2030은 2004년에 만들어진 ‘창의한국’ 이래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갖춘 국가 문화정책 보고서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문화예술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위계와 권력에 의한 예술계 젠더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 이후에 국가 문화정책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던 만큼 문화비전2030은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문화비전은 어떠한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을 담아야 할까?

첫째, 문화비전은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사회갈등을 겪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6년에 불과 1인당 국민소득 114불, 수출은 2억 5,575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50년 후인 2016년에는 2만 7561달러로 241배, 수출은 6천억 달러로 2,400배가 상승했다. 먹고 살만해 졌지만, 살벌한 경쟁과 숨 막히는 발전 논리에 시달려야 했다. 치열한 입시경쟁, 경제 불균형, 지역 격차,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뒤따랐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문화시설보다는 그 시설을 즐기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문화비전은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나가야 한다. 국가 문화정책은 이제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검열과 통제의 정책에서 자율과 협치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국가 문화정책이 관리해 온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을 이념적 잣대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자율성, 지원 독립성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제시를 통해서 문화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문화비전은 또한 과거 청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문화정책, 즉 인구감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간파하고 그에 적합한 중장기 문화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문화비전은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문화현장을 바로잡는 문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공연예술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계권력과 계약불이행, 혹은 불공정 계약 등으로 현장 기층 예술인들이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에서도 기층 현장인력들이 계약과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육계에서도 선수와 지도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위계에 의한 부당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번째, 문화비전은 중앙 집권에서 자치 분권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 형 개헌으로 문화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 분권의 실현에서 지역문화 정책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의 분권은 문화균형 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 있어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35개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더 많다.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될 정도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늘려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여행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문화로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를 견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기술자동화에 따른 인간 노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다.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인간의 본연의 노동과 생산력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문화와 예술이 기술과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문화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비전은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나가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위계와 권력에 의한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실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불평들을 없애는 실천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은 오래 동안 자행되었지만, 침묵했던 남성 위계 권력에 대한 일상적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안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 젠더 감수성의 고려와 젠더 주류화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서 젠더폭력의 구조가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비전은 젠더 폭력에 대응하고, 젠더 감수성을 중시하며, 젠더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2) ‘문화비전2030’의 가치와 방향

문화비전2030은 이러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설정하였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성은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문화취향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를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산업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가 혁신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의 창의성은 교육, 복지, 도시재생,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자율성의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의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3대 방향을 정했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문화적 권리를 중시한다.

국가 문화정책에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는 개인이 스스로 문화적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만 아니라 일상에서 개인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문화 활동의 접근권 보장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다양성의 실현' 은 계층, 세대, 성차, 지역 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다양성의 원리는 차이와 공존의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와 예술의 자원이 한쪽 집단에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통문화유산을 중시하되, 현재와 공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은 문화다양성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창의성 확산' 은 문화가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창의성은 단지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만드는 원천만이 아니라 문화가 교육, 환경, 복지, 통일과 같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

3) '문화비전2030' 의 9대의제

이러한 문화비전의 3대 가치와 방향을 기초로 문화비전2030은 대표적으로 9대 의제를 설정했다. 3대 방향에 따른 9대 의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대 방향	9대 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개인의 자율성 보장' 의 대표과제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시에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과 집 가까운 동네에서 문화여가를 즐기는 '문화놀이터' 사업, 그리고 생활예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에는 가칭 '예술인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실시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성평등문화 실현' 은 당초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의제로 합류했다. 성적 위계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이 문화예술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에서 제시하는 의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이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사라져가는 언어와 전통문화의 보호, 그리고 관광과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는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문화콘텐츠 유통불공정 행위 해소, 공정한 스포츠문화 환경 조성을 할 계획이다. 지역문화 분권의 현실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50개 선정, 매력적인 지역관광도시 선정, 협치를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융합적인 문화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예술교육과 문화 R&D 확대 등을 제시했고, 미래와 통일을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고자 '남북문화교류 협정체결', '남북문화동질성회복 프로젝트' 등을, 문화가 사회혁신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일상과 삶이 통합되는 문화지대 조성, 창의적인 혁신학교 설립, 창의적 문화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의제3)의 원리와 주요 과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의 조건이자 공동체·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화정책의 목표이다.

[문화다양성의 기본 원리]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민족·인종, 성별, 장애 등의 사회적 차이를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삼고 집단학살에까지 이르게 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로부터 도출된 가치임
-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기본 속성이자, 인류사회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한 일차적인 조건으로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 유네스코 헌장)
-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되고, 문화다양성은 생물다양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류생존의 요건으로 간주됨 인권선언)

[문화권 보장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여건 조성]

-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개성 있고 다양한 정체성들,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들과 사회들의 문화적 표현을 통해 구현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그러므로 문화적 차이가 인종차별 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동시에 모든 문화는 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됨 (유네스코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우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에서만 번성할 수 있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문화생활 참여권 및 문화향유권,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보호, 문화적 표현 및 창작의 주체에 대한 권리 보호 등의 창의성을 포함해야 함
- 따라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적 권리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상호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즉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과 향유가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

[관련법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

●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국이 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 그러나 문화다양성 정책은 각 정부부처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취약한 상태로 추진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본래적 가치와 지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특정한 정책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한계를 지님

● 이러한 정책적 위상과 기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 기능의 형식성과 취약성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의 실현과 확산을 도모함

<대표과제>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강화 및 법제 정비
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4.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5. 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현대화
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정책 마련

3. 문화다양성 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들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강화 및 법제 정비

추진과제 0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강화 및 총괄부처로서 문체부의 책임성 제고

□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상 및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위상 법적 명시

* 문체부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종합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감독 권한 확보, 평가; 조사; 권고 등의 실질적인 행정수단을 갖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
(범정부 차원의 실행지침으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기금, 소속기관 등의 운영에서 운영주체 및 종사자; 보조사업자 등의 자격요건, 사업운영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행규정, 상벌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제도화

*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참여자 및 운영주체의 인식 개선, 정책효과 제고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지침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

추진과제 02: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 총괄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다른 정부부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 기능을 분담
* 문체부는 이러한 실행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
*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부처와 실행부처를 명확히 한 위에서, 이를 토대로 한 정부 간 협력방안 및 그 실행체계(부처 간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 포함)를 법정 기본계획에 반영
* 총괄부처인 문체부의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결과의 공론화, 심의결과의 정책반영 및 반영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화, 정책관리 방안 수립 및 실행의 의무화 등의 절차를 보강
* 이러한 정책적 절차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요구되는 연차보고서 및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들이 실질적인 정책성과 관리의 기초자료이자 지표가 되게 함
* 총괄부처의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부처들의 협력과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실효화

*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운영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와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의 기능을 명확히 구별함
* 심의기능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협의체 내에 문화의 모든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문화정체성 관련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효화
* 동시에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부간 실행 협력체의 성격 역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추진과제 03: (기본법화) 문화다양성을 문화정책 전반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 현행「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실무와 국민인식 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정 계획 수립의 범위나 정책의 위상 등에 제약이 적지 않음

* 이에 법률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충실하게, 협약에서 적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과 범위를 적용하여 확대 개정 추진
* 확대 개정 시, 법률의 위상을 기본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문화예술(문화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다양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 (유관 부처의 관계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적용 단계적 검토·추진)

□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 사이의 명확한 관계설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추상도가 높은 문화정책의 가치 및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헌법적 가치 및 원칙과의 조응은 물론, 다른 문화 관련 법률들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규정하는 법적 위상을 갖도록 정비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중요
*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문화 관련 법률 전반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의 적용 및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조항의 신설
* 또한 문화다양성 개념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문화기반시설, 문화재, 관광, 체육 등의 포괄적인 영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및 평가 등의 수립 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

추진과제 04: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개념 및 범주의 재정립

□ ‘문화적 표현’ 개념의 법적 정의 및 정책영역의 명확화

*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문화적 표현’ 개념을 중심에 둔 정책 개념의 명확화
* ‘문화적 표현’은 ‘창조성’에 기인하는 표현 영역(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문화·창조산업의 영역에서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 접근/향유)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표현 영역(나이, 성별/젠더, 장애, 민족/인종, 성적 지향, 종교 등에서 기인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문화적 가치 등)으로 구분
*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책 영역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이 체계를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반영

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추진과제 01: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 법제화

□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주체인 ‘공공기관’에 의한 문화다양성 침해를 우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선도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위원회 등의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특수법인,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이와 같이 혐오표현의 발화주체를 특정하여 문화다양성 침해를 공적 주체로부터 금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공적 주체의 경우에는 어떤 매체나 공간에서도 일체의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독일 <증오선동금지법>(1994), <혐오금지법>(2018), 영국 인종/종교적 혐오방지법(2006) 등 참조

□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부정적·적대적·차별적 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제 근거 마련 검토

* “문화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동시에 타인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해 문화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혐오표현’과 관련된 논의들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차별금지가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것이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직결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현행의 국제법 (문화다양성 협약) 및 국내법 (문화다양성법)에 위배된다는 관점이 부재함
* 이는 현재의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위상 및 실효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문화다양성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법적 근거의 마련을 검토하고 반영
* 이때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의 침해는 곧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재, 처벌 등의 정책수단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
*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 시에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제재를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논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제도적,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

추진과제 0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요소로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확대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원·공무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등 추진

* '무지개다리사업' 과 같은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확산을 위한 지침과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활용
* 직장 및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추진과제 03: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규정 신설

□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영화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전반에, 문화다양성을 보호,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

*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기관장, 운영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에서 (가칭)문화다양성 쿼터제 도입
* 기관 소속 직원의 다양한 문화정체성 보장 의무화
* 소수자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전파 및 접근의 공평성 보장을 위한 기관운영의 방식 개선
* 문화 프로그램에서 소수자의 문화정체성 관련 관점의 적용
* 소수자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지원 등

□ 문화기반시설 등에 대한 각종 기관평가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평가항목 개발 및 적용

추진과제 04: 지역문화정책 및 미디어·콘텐츠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실현 방안 마련

□ 지역문화 진흥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통합지침 마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일차적으로 생활권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가족, 이웃 등)를 통해서 형성, 변화,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인정, 포용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역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접근 필요
*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으나, 그 대상범위나 내용, 정책수단이 상이함
*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 및 사업 실행 등의 근거 마련 및 방향 제시, 중앙과 지역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사회 참여 촉진

□ (가칭)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및 (가칭)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

*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원천임을 인식
* 이에 관한 자율적 참여 및 지역단위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가칭)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 문화다양성을 척도로 한 (가칭)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 등으로 인식 제고

□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 기반 문화상품·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 강화 방안 마련

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추진과제 01: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정체성' 개념 및 정책 범주 정립

□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적·핵심적 정책범주 설정

* 정책범주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국내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우선적, 핵심적인 정책 범주 설정
* 민족/인종, 나이, 종교, 장애(신체적 조건), 성적 지향,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법률상 범주들의 검토(문화기본법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 이에 더해 국내 현실에 기초하여, 직업, 외모, 부모, 학력, 출산 여부, 혼인 여부, 거주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의 범주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범주 및 과제를 발굴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채택 (2000) →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2001) → 국가별 다양성 헌장 제정 (2004~) → 유럽위원회의 다양성 헌장이 강령으로 시행(2010)

○ 유럽의 다양성 헌장은 (1)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자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가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이를 국제인권문서로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기본권헌장 등)의 연장이며, (2) 1960년대 미국의 공민권운동 및 그 결과 제정된 공민권법(1964), 차별수정조치(1965) 등에 기원하여 제정, 실행된 것임

추진과제 02: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을 위한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 단계(창조, 유통/전파, 향유 등)에 따른 정책 방안 도출

*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및 다언어 문화서비스 확대, 장애의 문화적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교육 및 유대강화 프로그램 지원,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인 사업 발굴
* 다양한 문화정체성이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접근성 및 참여 제고(문화다양성 쿼터제 도입)

□ 상호문화주의적인 문화간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사업을 참여자간 교류, 집단학습이나 협동학습, 또래학습, 공유·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다수자/소수자를 구분하거나 특정하는 방식의 참여자 구성을 넘어서는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문화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지역 간 문화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내 다양한 소수자 문화정체성 표현 증진 및 교류 강화
* 연령/세대 간 협력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기반시설의 쌍방향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추진과제 03:문화정체성에 기반 한 예술 지원의 다양성 증진

□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비중 확대

* 다양한 문화정체성이 차별 받지 않고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사업에 (가칭) '다양성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성찰, 사회적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술작품 또는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우수 작품 및 콘텐츠의 전파 및 유통 지원 실시

□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분야의 종사자, 전문 예술인, 크리에이터, 체육인 등의 양성과정 관련 '문화정체성 존중을 위한 교육 지침' 마련

4)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추진과제 01:지역어 보전 및 진흥으로 언어문화 다양성 증진

□ 지역어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지역어 사용 의식 및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어 정책 방향 마련

* 소멸 위기의 산간 도서 지역의 어휘를 조사하고 채록
* 지역적·사회적 다양한 변인에 따른 언어 변이를 조사하는 등 언어 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 지역어 자료 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

* 지역의 특색 있는 언어문화를 담은 지역어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 연구, 전시에 활용
* 지역어가 다른 문화 자원과 결합하여 문화 콘텐츠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어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 산업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역어 진흥 행사 지원

* 지역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어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추진과제 02: 농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수어 진흥

□ (수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서 한국수어 위상 강화*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한국수어 원시말뭉치 구축

* 기 구축한 원시말뭉치의 정밀 전사를 통한 주석말뭉치 지속 구축
* 말뭉치 전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전사 연수회’ 운영
* 말뭉치 구축 및 전사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 한국수어사전 편찬, 한국수어 문화정보 구축 등

□ (점자) 한글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위상 강화* 점자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점자규범 정비

* 2017년 개정된 한국점자규정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보급하여 개정 규정 홍보 확대
* 온라인 점자 규정 해설 교육 자료 제작을 통한 점자 규정 보급
* 언어생활 다변화에 따른 점자 규정 적용을 위한 점자규정정비위원회의 상시 운영 추진* 점자 전문가 양성, 점자 출판시설 지원, 점자 교재 개발 등

5) 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현대화

추진과제 01: 전통문화 정책의 안정성 확보 및 체계적 추진

□ 전통문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 검토

* 전통문화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법률 제정이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입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 전통문화 정책 추진 협력체계 구축

* 전통문화는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있고,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자산인 바, 문화 관계 부처 및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및 그 관련 기관, 단체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함

□ 각 민관협력 활성화 등 통합적·효율적 협업체계 마련

*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 제3섹터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마련 및 콘텐츠 공동 활용 확대

추진과제 02: 지역 전통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 현황 조사, 발굴 및 활용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추진

* 지역소멸,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 보존 상태 및 자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

□ 인문적·지리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승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의 발굴 및 지원

* 전통적인 생활문화 및 공동체 문화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단위의 발굴 및 보존을 넘어 공동체의 생산양식 및 전승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굴로 전환
* 기존의 민속문화 중심에서 현대에 부합하는 생활문화 및 공동체문화로 발굴 및 보존 대상의 확대 지원
* 전승자 중심의 지원에서 공동체 및 마을 단위의 집합적 주체 대상 지원으로 확장

□ 공동체 내 생활문화 및 생활기술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생활문화와 생활기술 공유 및 전승을 위한 (가칭)생활문화마을, (가칭)마을장인 지정 및 지원
* 지역 내 공유공간을 (가칭)생활기술전승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지원

□ 신규 전통문화 자원 발굴

* 통일준비 시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기존의 특정 종목 및 기술 보존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문화 자원 발굴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기여

□ 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으로 전통 인문자산의 소멸 방지

* 연구·보급 및 창작소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활용 유도

추진과제 03: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 확대

□ 세시풍속 및 전통문화의 확산·일상화 추진

* 전통문화와 연계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사업화
* 지역 마을공동체 민속잔치·마을잔치 활성화로, 마을 공동체 문화 재현·전통예술 보존

□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현대화를 위한 창작 활성화

* 지역의 전통문화 양식과 문화유산 자원을 공연 및 창의적 콘텐츠로 활용
* 전통문화 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 서비스 추진

추진과제 04: 현장·지역 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

□ 지역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의 접근 기회 확대 및 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 증진
* 항일독립문화유산, 풍납토성 등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호·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에 기여

□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

* 매장문화재 보호에 따른 국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운영에 있어 공익·사익간 조화 도모
*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범위 확대
 (현행: 연면적·대지면적 제한 ⇒ 개정: 대지면적만 제한)